

의안번호	2220980
의 퇴 인	송옥주 의원
회 답 일	2026. 9. 16.
추계번호	26A4487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의2 신설 (국유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사 용허가 등)	○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음 －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·녹지대·방음벽·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희공간 －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구역의 제방·비탈면 및 그 밖의 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유희공간 －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및 그 주변 유희공간 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희공간	재량규정
2	안 제32조의2 신설 (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설치를 위 한 사용료의 감면)	○ 중앙관서의 장은 안 제30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－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 － 지역주민이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－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－ 국가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3	안 제43조의2 제2항 신설(국유 유희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)	○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유 유희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,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0조의2 신설 (국유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사용허가 등)	○ 미대상(재정수입의 증가)
2	안 제32조의2 신설 (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용료의 감면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(국유 유희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)	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,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유 유희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,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,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안 제3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이미 사용허가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 개정안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대상·규모 및 감면율과 국유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책의 내용·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사용료 감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와 건수, 감면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규모 및 감면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, 사용료의 감면율·감면기간 및 감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
- 국유 유희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,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·방법·절차 및 기존 국유재산 관리체계와의 관계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만,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
- 참고로 최근 3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 설비용량을 살펴보면, 2022년 3,689MW, 2023년 4,002MW, 2024년 4,139MW로 나타나고 있음
 - 2024년 기준 원별로는 태양광이 3,956MW로 전체의 95.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풍력 113MW(2.7%), 바이오 68MW(1.6%), 폐기물 3MW(0.1%) 순으로 나타남

[표 1] 최근 3년간 재생에너지 원별 신규 발전설비용량: 2022~2024년

(단위: MW)

구 분	2022	2023	2024
재생에너지 합계	3,689	4,002	4,139
태양광	3,278	3,682	3,956
풍력	238	219	113
수력	0	5	0
해양	—	—	—
바이오	161	88	68
폐기물	13	8	3

주: 신규 설비용량은 해당 연도의 신설 및 증설 용량이며,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한국에너지공단, 「2024년 신·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(2025년 공표) 결과 요약」, 2025. 12. p.3,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